[별표 2]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세부사항(제4조 관련)

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시 세부 심사항목(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도 동일한 기준 적용)

세부심사사항	심사결과
가. 신청서류 구비요건	
나.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식품이력추적관리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축되었는지 여부	
다. 안정적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용환경을 갖추었는지 여부	
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및 바코드 등을 적절하게 부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소에만 해당)	
마.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보관·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바.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자료를 표준화 요건에 맞게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식품에 문제가 발생되어 회수 등을 요구한 경우에 이에 응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 적합의 기준 : 세부심사 7개 항목이 모두 적합한 경우만 적합